

의안번호	제392호
의결연월일	2021. 10. 18.

-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10. 8. 예산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1. 10. 8.

다. 상 정 일 자 : 2021. 10. 18.

제274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## 2. 제안설명 요지 (교육체육과장 : 이 항 재)

### 가. 제안이유

- 예산종합운동장 내 다목적구장, 볼링장 및 다목적체육관 조성에 따라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『체육시설』 정의에 다목적체육관, 볼링장 추가(안 제2조)
- [별표 1] 『전용료』 중 다목적체육관, 다목적구장의 부과기준 신설
- [별표 1] 『전용료』 중 생활체육관, 삼교국민체육센터, 봉산농어촌 복합체육센터의 체육경기 사용시간 변경
- [별표 1] 『전용료』 중 조기 전용료 감액 및 야간 전용료 가산 규정 마련

- [별표 1] 『전용료』 중 야간 전용료 가산 규정에 따른 운봉길 체육관 체육 이외 행사 토·공휴일 야간 전용료 변경
- [별표 1] 『전용료』 중 초과 전용료 부과기준 변경
- 운봉길체육관 외 실내체육관 냉·난방시설 사용료 마련
- 체육관 등 기타 조명시설 사용료 변경
- 그 밖에 『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』에 따라 용어 정비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박 우 현)

- 본 조례안은 예산종합운동장 내 다목적구장과 볼링장 및 읍·면 다목적체육관 구성에 따른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, 기존 시설의 전용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새로운 시설에 대한 전용료를 타 시·군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정하고,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특성에 따라 이용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이용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, 기존 전용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등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므로,
-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### 4. 질의·답변요지

- 생 략

### 5. 토 론 요 지

- 없 음

## 6. 심 사 결 과

○ 원안가결

## 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## 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